

■ 정책동향

산업자원부, 對日 전력기자재 수출지원 강화

정부는 최근의 엔고를 대일수출 확대로 연결시키기 위해 실버산업·전력기자재·건축자재를 3대 유망분야로 선정, 집중 지원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일본 시장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실버산업, 전력기자재, 건축자재의 대일수출을 본격화 하기 위해 수출촉진단 파견,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인증획득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 3개 유망분야는 최근 엔고현상에 따른 일본 기업의 반응과 일본 정부의 정책 변화를 바탕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일본 무역관이 조사한 바를 토대로 선정됐다. 산자부는 이들 품목의 대일수출을 위해 분야별 수출협의회 구성을 통한 수출기업 조직화 및 공동시장 진출, 일본어 전용 인터넷사이트 개설, 디자인 개발 및 기술지원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이들 3대 분야의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수출시장별 무역여건 변화를 파악해 구체적인 시장별 수출촉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력기자재 분야

일본의 전력기자재 연간 수요는 3조6천억엔이며 주요 품목인 퓨즈, 개폐기, 커넥터, 배전반, 케이블 등은 수입시장 규모가 막대하다. 전력기자재의 경우 전력회사가 요구하는 기술 사양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신규진출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전력회사별로 납품 기준을 정해 놓고 공급 회사로 등록하거나 등록된 일본 기업을 경유해야만 납품이 가능하다. 최근 일본시장은 원가절감을 위해 해외조달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올해 전력회사의 설비투자계획도 385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산자부는 전기공업진흥회내 '대일중전기기자재수출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수출촉진을 위한 전시회 참가, 수출상담,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주요 전력기자재 생산업체와 상품정보를 수록해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일본 전력회사 구매담당자를 초청, 수출지원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 UPS 등 6개 제품 고효율 에너지 품목에 추가

앞으로 모니터 절전기, 무정전전원장치, 원심 냉동기, 산업 및 가정용 가스보일러, 펌프 등 6개 품목이 에너지기자재 인증 대상품목에 포함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지난 '96년 말 인증대상으로 지정된 품목 중 일부 품목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은 총 14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산자부는 이번에 추가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으로 지정된 모니터절전기·무정전전원장치·가스보일러 등이 기존 제품에 비해 에너지절감률이 7~44%에 달해 대부분 2년 이내에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는 또 의무사용 조항이 신설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우 에너지 절감효과가 우수하거나 기술적 신뢰성 및 경제성이 입증된 26mm 형광램프 및 안정기, 전구식 형광램프, 인

인체감지 조명기구, 고조도 반사갓 등 6개 품목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산자부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에 생산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등을 우선 지원해주고 대상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말 현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은 68개 업체의 216개 모델로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연 5.5%로 30억원 이내의 생산시설자금(3년 거치 5년 분할상환)과 3억원 한도내의 단기운전자금이 지원되며 에너지기술개발 시범보급사업에도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 정부조달사업 ‘적격심사낙찰제’ 도입

앞으로 모든 정부조달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적격심사낙찰제」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예정가의 90% 이상이면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업자에게 낙찰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가 주종이었는데 이는 기술능력보다는 요행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2일 오전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 이달 하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개정안에서 정부조달사업 중 △모든 공사와 용역은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고 △물

품조달 중 2억원 이상은 「적격심사낙찰제」 △물품조달 2억원 미만은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30억원 이상 공사와 2억원 이상의 물품·용역에 한해 적격심사낙찰제를 실시했다.

이 제도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업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정하고 점수에 미달할 경우 그 다음이 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입찰담합을 주도한 자의 입찰배제기간을 기존의 6월~1년 미만에서 1~2년으로, 담합을 한 자는 1~6월에서 6월~1년으로 확

대하는 한편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해 1월~2년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공사를 공동으로 맡을 때 해당지역 업체 1개 이상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사업을 기존의 78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되 실시시기는 2001년 1월 1일로 정했다. 또 입찰시에 하도급업체와 금액을 미리 내놓도록 하는 「부대입찰제」는 2001년

부터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우수제품 인증마크(GQ)를 받은 제품의 경우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정부기관들이 사업자의 부도 등을 우려해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연쇄부도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금지를 시행령에 명시했다.

중소기업청, 기초 공용부품 해외인증 지원

중소기업청은 수입대체효과가 큰 기초부품 50개를 선정해 이들 부품 생산업체 300개에 대해 해외 유명규격 제품시험 및 인증절차를 대행하고 인증비용의 70%를 지원해 줄 방침이다.

지난 9월 26일 중소기업청은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초부품중 해외규격을 획득하지 못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부품에 대해 해외 규격인증 획득을 이같이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주요 공용부품이 해외규격인

증을 획득하게 되면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기초부품의 독자적인 수출도 가능해진다. 수출완제품이 외국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부품도 동일한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나 대부분의 국내 기초부품들이 해외규격인증을 받지 못해 수입품을 사용해 왔다. 또 기초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대개 규모가 영세하고 인증을 받아야 할 규격수가 많아 인증획득을 기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재정경제부, 제조물책임법 2001년 10월 시행

오는 2001년 10월부터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이 결정됨에 따라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재정경제부는 PL법 시행시기에 대해 산업자원부와 논의한 결과를 이와같이 확정짓고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10월 1일 밝혔다.

PL법은 소비자가 구입한 가공 공산품으로 인해 재산상이나 신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보상해주도록 하는 제도로 수입품은 수입상이 보상해야 한다. 이 법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고 중국, 필리핀 등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도 도입한 상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PL법이 통과되면 내년초에 공포되므로 1년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차원에서 시행시기를 이와같이 못박았다.

산자부는 기업들 부담을 감안 2003년부터 시행을 주장했고 재경부는 2001년부터로 팽팽히 맞서 왔으나 최근 실무협약에서 최종 결정했다.

재경부는 PL법 필요성에 대해 △수출품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이미 보상을 해주는 반면 수입품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는 차별문제를 해결 △소비자 안전을 감안하는 제품 개발 주력 △PL관련 보험 가입시 기업부담 경감 등을 들었다.

▲ 제조물책임(PL)법 입법과 시행 시기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안



구 분	PL 대응 기반 조성	PL 대응 시스템 정립	PL 대응 시스템 확립
대 응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 TFT의 구성 · 제품안전성 Test 실시 · PL교육 및 홍보(전사원) · PL위원회 운영·지원 · PL입법 동향 분석 · PL대응 시스템의 구축 · 클레임 전담부서 구성 · 관련부서의 Feed Back · 안전사고 정보분석 · 안전성 기준설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 종합매뉴얼 제작 · 전사적 PL 정보망 구축 · PL 소송의 분석·대응 · 부서별 예방 매뉴얼 작성 · 문서관리시스템의 정비 · A/S PL 매뉴얼 제작 · A/S 직원 PL 교육·훈련 · 클레임 전담부서 교육 · PL 감사 시스템의 구축 · 각국 안전기준 test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 Claim 원인 분석 · PL 소송시 방어전략 수립 · PL 감사결과 업그레이드 · 문서관리 시스템 표준화 · 각국 안전규격의 획득 · PL 예방 부서별 임무정립 · 전사적 PL 예방 시스템 구축 · PL 소송시 조사·처리 · 소비자단체 등 시장정보 조사 · PL 보험의 가입